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경력단절 사유에 중증질환 명시 등 〉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926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경력단절 사유에 중증질환 명시 등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진숙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2. 6.
3. 회 부 일 : 2025. 2.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을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은 경력단절여성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에 중증질환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포함하고,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병력(病歷)도 고려함으로써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여 치료 이후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및 제17조).

Ⅲ. 검토의견

1. 경력단절 사유에 중증질환 명시 등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등 및 경력단절 예방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중증질환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 수립·추진시 여성의 중증질환도 고려하도록 하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업무에 중증질환 치료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제3호, 제3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 -----.
가. 혼인·임신·출산· <u>육아</u> 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가. ----- <u>육아</u> · <u>중증질환과</u> ----- -----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 <u>육아</u> 가	3. ----- ----- <u>육아</u> · <u>중증질환과</u> -----

현행	개정안
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u>모성 및 장애특성</u>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혼인·임신·출산과 <u>휴직</u>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 2. ~ 7. (생략) ②·③ (생략)	----- ----- -----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모성, 장애특성 및 중증질환</u>----- -----. 제1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 ----- ----- ----- ----- ----- ----- ----- -----. 1. -----<u>휴직, 중증질환 치료</u>----- ----- 2.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경력단절 사유로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¹⁾).

또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는 혼인, 임신, 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등을 수행²⁾하

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제1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혼인·임신·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

2.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3.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5.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일명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및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희망여성 등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일경험,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취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바,³⁾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도 취업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음.

개정안은 중증질환⁴⁾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의 범위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등에 관한 시책 수립·추진시 여성의 중증질환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이 치료 이후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년층 중증질환자의 경우 경제활동참여율이 가장 높은 시기에 치료를 위한 휴직·실직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회 복귀가 더욱 어려워지는

3) <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주요 취업지원서비스별 지원 대상 >

구분	대상	지원 절차	근거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여성, 미취업여성	직업교육훈련 상담(온·오프라인)→직업교육훈련과정 참가 신청서(온·오프라인) 및 구직신청서 제출→면접(오프라인)→선정 ※ 신청서 제출과 상담의 순서는 바뀔 수 있음 ※ 취·창업 의사가 분명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을 선발하되, 취약계층의 경우 우선 선발	현행법 제13조
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여성, 미취업여성	구직 상담 및 구직 등록→인턴 연계→인턴 채용지원금 지급→인턴 취업 장려금 지급 및 사후관리 ※ 인턴 희망 여성과 수요 기업체 간 근무 조건 등 고려하여 연계하되, 채용인원의 일정부분은 취약계층 연계 목표	현행법 제14조
경력단절예방	경력단절여성, 미취업여성, 재직여성	경력단절예방서비스 신청(온·오프라인)→상담(온·오프라인)→서비스 제공	현행법 제15조

자료: 여성가족부

- 4)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면제 등 특례 지원제도에서 지원대상자 중 중증질환자를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로 나열하고 있음.(자료: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30600>)

점, 암 발생률 및 생존율 증가 등을 고려 시 중증질환자의 치료 이후 생활을 위해 경제활동의 지속·유지가 중요하다는 점, 중증질환은 본인의 재직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비자발적 경력단절 사유 중 하나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 여성의 생물학적·생애사적 이유 및 이로 인한 차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개인만의 원인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이 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성(性)의 구별 없이 발생하는 ‘중증질환’을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명시하는 것은 이러한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여성의 경력단절의 사회구조적 문제성을 희석·경감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현행법에 따라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도 취업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현행법의 제정 목적은 임신·출산·육아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사유로 경력단절을 한 여성에 대해 경제활동 촉진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법 제정 취지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현행법은 중증질환 여부와 상관없이 경력단절여성 및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희망여성 등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개정의 실익이 낮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은 경력단절을 유발하는 다양한 사유 중 대표적인 사유를 예시한 것으로, 이에 한정하여 여성경제활동 촉진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모든 사유를 명시하는 실익이 크지 않으며, 명시할 경우 오히려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경력단절이 된 사람은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650
